

【 국내금융 뉴스 】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 국해부는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유배법 개정 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과 국제기금(IOPC Fund)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됨.
- 주요 조문별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선박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함.
 - 일반선박 보장계약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국제협약의 적기 수용으로 국적선박의 외국항 입항시 차질 해소 및 선박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체계적인 배상제도를 정립한다는 취지임.
 -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시 유류오염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 및 보험가입으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임.
 - 한편, 유배법 개정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 및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수입유량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됨.
- 이번 유배법 개정으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강제화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될 것임.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동일하게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선박의 소유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확대, 국토해양부 해상안전정책과, 11/17)